

서울공연전단마케팅사업 운영 규정

제정 2010. 7. 18
일부개정 2014. 5. 26
일부개정 2016. 1. 20

제1조 [목적]

이 규정은 서울연극협회(이하 '협회'라 칭한다)에서 운영하는 서울공연전단마케팅 사업(이하 '사업'이라 칭한다)의 운영 원칙을 밝히고 이를 상호 성실히 준수함으로써 신청 단체의 공연 홍보마케팅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효율적인 행정 체계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[접수 신청]

사업 신청은 2주에 한 번씩 협회 홈페이지 공지에 따라 지정된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한다.

제3조 [협회 정단체]

1. 협회에 소속된 회원 8명 이상의 단체를 정단체로 확인한다.
2. 협회 회원이 8명 미만일 경우 비단체로 간주한다.
3. 정단체 여부는 사업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.

제4조 [단체 선정]

1. 사업 단체 선정은 다음과 같은 순으로 정한다.
 - ① 서울연극협회 소속 단체의 공연
 - ② 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, 한국공연프로듀서협회, 한국무용협회, 한국뮤지컬협회, 한국민족극운동협의회, 한국연극협회 등 공공단체의 축제 및 제작 공연
 - ③ 서울연극협회 소속 회원이 70% 이상 참여하는 단체 공연
 - ④ 이 외의 공연
2. 선정 제외 단체
 - ① 사용료를 미납한 단체의 공연
 - ② 협회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공연

제5조 [전단 배포 배정]

1. 전단 배포에 대한 선정은 제3조에 준하여 진행된다.
2. 한 단체마다 한 공연의 전단을 배포 및 비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신청 단체가 적을 경우에 한하여 추가로 배포 및 비치가 진행될 수 있다.
3. 전단은 공연 개막 1개월 전부터 배포할 수 있다.
4. 동등한 자격 조건에서는 공연개시일, 접수순을 고려하여 배정한다.
5. 신청 단체는 특별한 사유 없이 변경 및 취소할 수 없다.

제6조 [사용단체 안내]

1. 사업 계약은 사용료 납부와 동시에 체결된다.
2. 단체별 사용료는 협회 홈페이지 공지를 통하여 안내한다.

제7조 [사용료]

1. 협회 정단체 회원이 8명 미만인 경우 비단체로 간주한다.
2. 사용료
 - ① 정단체 : 74,250원 (부가가치세 포함)
 - ② 비단체 : 110,000원 (부가가치세 포함)

제8조 [사용료 납부]

1. 사용료 및 납부기간은 제5조 2항에 준하여 협회 홈페이지에 공지된다.
2. 사업 선정 단체는 협회에서 공지한 납부기간까지 사용료를 송금한다.
3. 지정된 일자까지 미납 시에는 배포 및 비치 불가하다.
4. 협회는 사용료 납부확인 후 사용 단체에게 세금계산서를 일괄 발행한다.

제9조 [전단 규격]

1. 전단 규격은 99m X 210m 세로형을 원칙으로 한다.
2. 이외의 규격일 경우 신청단체와 협의하여 비치 여부를 정한다.

제10조 [전단 제출]

1. 전단 제출은 협회 홈페이지 공지를 통하여 안내한다.
2. 기한 이후에 제출한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도 배포 및 비치가 불가능하다.

제11조 [배포 및 비치 작업]

1. 배포 및 비치 작업은 2주에 1회씩 일요일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.
2. 작업일에 자연현상(비, 눈)이나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인해 작업이 어려울 경우 익일 작업으로 하며, 이때 관련 사항을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 단체에 통보한다.

제12조 [배포 해지]

사업 배포 해지에 대한 환불금은 일체 허용하지 않는다.

- 부 칙 -

제1조 [시행일]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